

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.
- 마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 제1호	시정명령 1개월	사업정지 8일	사업정지 16일
나.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, 수용인원, 종사자의 수·자격, 설치·운영신고, 변경신고 또는 이용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 제2호			
1)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

우		1개월	8일	16일
2) 수용인원기준을 위반하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
여 운영한 경우		1개월	6일	10일
3)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
종사자의 수가 기준에		1개월	8일	16일
미달되거나 자격이 없				
는 자를 고용한 경우				
4) 정신재활시설 이용·운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
영에 관한 규정을 위		1개월	6일	10일
반한 경우				
5) 해당 시설의 설치·운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
영 신고 및 변경신고		1개월	8일	16일
를 위반한 경우				